

화장품 산업의 대중국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 및 비관세조치 대응전략 수립을 중심으로*

정우경
강원도청 중국통상과 주무관

이서영
목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태인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xport Strategy of China to the Cosmetic Industry: Focus on Countermeasures against Tariffs and Non-Tariff Measures

Woo-Kyung Jung^a, Seo-Young Lee^b, Tae-In Kim^c

^aGangwon Provincial Government, Chinese Trade Division, South Korea

^b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Mokwon University, South Korea

^c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 Busines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0, Revised 18 March 2020, Accepted 25 March 2020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and solutions for entering China in the tariff and non-tariff sectors of the cosmetic industr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 tariff rate of cosmetics in China, and analyzed the export cost by actually interviewing the exporting companies to derive the economic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Findings - First, We proposed the use of the FTA business model (basic cosmetics), the use of Korea-China FTA tariffs (foam cleansing, toothpaste), and the use of APTA tariffs (perfume). Second, We propose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to facilitat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nd improvement of FTA awareness among corporate practitioners. Third, We proposed the expansion and support of the AEO MRA system and the expansion of Korea-China MOU conclusions regarding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domestic licensing system and technical conditions. Fourth, We proposed the use of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related to obtaining overseas certifications and overseas expans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same industr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HS3304 products excluded from the Korea-China FTA should take full advantage of the FTA business model. In addition, the non-tariff measure costs are fixed costs per year, so the ratio decreases as the number of exports and export volume increases.

Keywords: Korea-China FTA, Tariff Rates, Non-Tariff Measures, Export Costs, Cosmetics Industry

JEL Classifications: F10, F13, F18, K33

* 본 연구는 2019년도 산학협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또한 제1저자 정우경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임.

^a First Author, E-mail: elvis2jung@gmail.com

^b Co Author, E-mail: leesy@mokwon.ac.kr

^c Corresponding Author, E-mail: tikim@kangwon.ac.kr

© 2020 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2017년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14.6억 달러)은 2013년 대비 461% 증가하였으며, 중국내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와 꾸준한 한국산 화장품 선호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이행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단체여행 금지, 한류 문화 콘텐츠 제한, 수입 규제 등 비관세부문을 강화함에 따라 2018년 이후 한국 화장품 수출증가가 감소하고 있다.

최근 국제무역센터(ITC)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중국 화장품 시장의 국가별 수입액은 일본 7억 7천만 달러(약 9,200억원), 프랑스 7억 3천만달러(8,800억원), 한국 7억 2천만 달러(약 8,600억원)로 집계되었다. 2018년 중국 화장품 시장의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은 일본과 프랑스에 밀려났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약진과 중국 화장품 시장의 프리미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중저가 기초화장품 위주에서 벗어난 색조 화장품과 헤어 케어 등 품목 다양화와 함께 프리미엄 화장품 및 초프리미엄 제품 출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KOTRA 전략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 화장품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한-중 FTA 활용률이 다른 FTA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 역시 눈여겨 볼만하다.

관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한국의 FTA 수출 활용률은 74.7%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84.2%)과 유럽(86.7%), 캐나다(95.2%)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중국(57.3%), 아세안(50.8%), 콜롬비아(52.6%), 베트남(45.5%), 뉴질랜드(38.6%)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는 장기 관세철폐 비중이 높아 발효 5년차 미만인 2018년의 수출 FTA 활용률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화장품 산업은 대중국 비교우위 산업이지만, 한국이 관세 즉시철폐 또는 15년 균등철폐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개방예외(입술화장품, 눈화장품 등은 양허유형 E) 또는 부분

감축(기타화장품 등은 양허유형 PR-20)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화장품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부문에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KOTRA, 2015). 또한 비관세부문에서 역시 CFDA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인증과 중국내 라벨링 제도, 그리고 위조방지제도 등 무역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가 중국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화장품의 대중국 진출을 위한 보다 정교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관세 및 비관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서 대중국 진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첫째, 화장품 품목의 PSR(개별원산지기준)과 중국의 수입관세율 종류,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관세부문의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화장품 인증 등 비관세부문의 소요시간과 비용을 확인하고, 이러한 경제적·시간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과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진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중 FTA 관세율 및 중국의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문헌연구와 수출사례를 통한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 화장품의 PSR(개별원산지기준)의 난이도와 중국의 수입관세율 종류와 추이, 한-중 FTA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관세부문 활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화장품의 중국 무역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현황, 비관세조치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소요시간과 비용 확인을 위한 사례분석을 통해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살펴본 후, 제4장에서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서 화장품 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한-중 FTA 선행연구

대중국 수출전략관련 선행연구로는 FTA 활용

과 FTA 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즉 FTA 활용이 관세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들은 한-중 FTA 관련하여 FTA 활용과 FTA 성과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요인들이 FTA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김한성, 조미진 (2010)의 연구는 한국-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의 경직성과 FTA 활용 간에 실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규정의 경직성지수와 FTA 특혜관세 활용률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고, 또한 특혜 양허세율과 FTA 활용률 사이에도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미진, 김태항 (2012)는 한-EU FTA 발효 후 100일 동안의 FTA 수출 활용률이 62.3%이고, 한국의 수출입 상품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소비자 후생의 증대와 생산자 이익의 증대 등 경제적 성과가 있음을 밝혔다. 심재권(2013)은 최고 경영자의 해외수출경험과 FTA 활용도, 수출성과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태인, 이준건 (2014)은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기업의 특성(글로벌 지향성, 경쟁력, 규모)은 FTA 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 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았다. 또한 FTA 인지도가 FTA 수출활용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FTA 활용도가 직접적인 FTA수출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FTA 활용도가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가 상당부분 철폐되고 안정적인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용태 (2014)는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와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업외적요인과 기업내적요인 중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으며, FTA 활용도가 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윤영호, 나도성 (2014)은 FTA 활용역량이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마케팅역량과 수출몰입이 수출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수출성과 확대를 위해 FTA 체결지역에 대해 새로운 시장진입 지원 및 시장점유율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정책을 더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박근호 (2015)는 FTA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관련 학습역량이 FTA 활용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품개발지식 활용과 시장관련 지식을 적극적 활용하는 기업이 지향성이 높을수록 FTA 활용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즈평, 김태인 (2016)은 화장품 산업의 한-중 FTA 활용전략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글로벌 지향성, FTA 인지도, 비관세장벽 완화조치 부족이 FTA 활용도와 FTA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FTA의 활용도가 FTA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FTA 활용도는 FTA 인지도와 FTA 성과의 상관관계에 매개효과(부분매개)가 있고, 비관세장벽 완화조치 부족과 FTA 성과의 상관관계에 매개효과(완전매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운엽 (2018)은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FTA 활용, R&D 역량(R&D 집약도, 학습기능, 외부네트워크 기능),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을 채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FTA 활용과 R&D 역량, 기업가정신 모두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영광, 최장우 (2018)는 관세청의 YES-FTA 컨설팅을 이용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기업특성요인(CEO의 FTA 활용의지, 기업의 FTA 수출비중), FTA 지원제도 활용동기(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이, FTA 지원제도 운영특성요인(지원제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FTA 활용을 증대시키고, FTA 역량강화와 기업 실적제고로 이어져 정부의 FTA 활용지원제도의 성과를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창봉, 정재우 (2018)는 자원기반관점에서 원산지관리역량 요인들이 FTA 원산지검증성과와 수출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업

의 원산지인증인력과 기업의 수출마케팅은 FTA 원산지검증성과 수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은 FTA 원산지검증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중국 수출전략, 즉 한-중 FTA 활용과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독립변수(내적·외적 환경 요인) - 매개변수(FTA 활용도) - 종속변수(FTA 성과)”의 FTA 활용과 성과의 선순환 효과가 현실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 비관세조치 선행연구

비관세조치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국가 또는 국제기구별 법제 및 정책, 그리고 각종 행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선행연구 역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연구의 방법론적으로 접근할 경우,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비관세분야별로 접근할 경우, 크게 FTA와 같은 국제적 협약 및 국가별 법률과 정책분석, 각 인증제도와 지식재산권 등록 등의 행정적 제도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각국 비관세조치 제도로 인한 경제적 효과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의 비관세조치 관련한 문헌연구는 FTA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연구와 중국 비관세조치분야 법률 및 행정법규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중훈 (2012)은 수출입 규제, 지식재산권, TBT, 서비스 장벽, 환경 규제 등 전반적인 중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관세조치별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동휴·이희진·곽주영 (2013)은 FTA TBT장을 분석하였고, 손기운 (2015)은 한·중FTA 비관세장벽 규정과 WTO SPS 및 TBT 협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논의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도출하였다. 류예리 (2015)는 중국 의약품 분야의 무역장벽을 한·중FTA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왕상한·박언경 (2016)은 중국 위생검역분야 관련 규범을 분석하여 한·중FTA를 활용한 중국위생검역 완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무역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연구는 SPS와 TBT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국화 (2013)은 중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찬우 (2012)은 SPS와 TBT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녹색무역장벽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은웅 (2012)은 중국 및 EU의 무역에 관련된 환경규제를 비교연구하였다. 최홍실·이은섭 (2005)은 환경규제조치에 대하여 라벨제도 및 SPS와 TBT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최홍실 (2007)은 중국의 환경규제 법체계를 중심으로 WTO의 투명성 원칙과 사법심사제도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비판적인 시각으로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우경·김태인 (2018)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국가기술표준 “위조방지역추적코딩기술조건”이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서의 가능성을 도출하였으며, 대응방안으로 국내기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제안하였다.

정우경 (2018)은 중국의 각 종 인증제도 등 비관세조치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시기가 늦춰지는 시간적 지연 효과가 나타나며, 또한 인증획득 및 각 종 라벨 제작 등의 비관세조치로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중국의 비관세조치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대중국 수출전략의 현황과 문제점

1. 화장품의 PSR(개별원산지기준) 현황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 관세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와 중국이 맺은 무역협정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맺은 무역협정은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구 방콕협정 1976년 최초 발효, 2001년

Table 1. 한-중 FTA 및 APTA 화장품류의 개별원산지기준(PSR)

물품명	중국 HS 코드	한-중 FTA	APTA	
향수와 화장수	3303.00-00			
입술화장용품	3304.10-00			
눈화장용품	3304.20-00			
매니큐어 페디큐어	3304.30-00			
파우더 화장품	3304.91-00			
기초/마스크 팩	3304.99-00			
샴푸	3305.10-00			
퍼머넨트 제품	3305.20-00			
헤어랙터 제품	3305.30-00			
기타(헤어린스) 염색약	3305.90-00			
치약	3306.10-10		부가가치기준(비원산지+원산지미상	
기타 치약	3306.10-90		부가가치 55% 이하	
치실(dental floss)	3306.20-00	CTH	(FOB가격 대비))	
구강 청결제	3306.90-10			
기타 치위생용품	3306.90-90			
면도용 제품(로션)	3307.1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307.20-00			*미충족의 경우
목욕용 제품류	3307.30-00			APTA 활용 불가
향기성 조제품	3307.41-00			
실내용 방향 조제품	3307.49-00			
탈모제/기타 화장용품	3307.90-00			
화장실용품	3401.11-00			
세탁비누	3401.19-10			
물티슈	3401.19-9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3401.20-00			
폼 클렌징	3401.30-00			

자료 : 관세청 세계 HS 2019 및 협정문 원산지규정을 참조하여 재구성

제3라운드 협상시 중국 가입)와 한-중 FTA(2015년 발효)가 있고 이들 협정에 따르면 원산지규정에 따라 양허품목의 개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입관세의 양허 또는 철폐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한국수출 화장품이 APTA 및 한-중 FTA의 양허품목인지 확인을 한 후, 양허품목에 해당할 경우 협정상의 개별원산지기준(PSR) 충족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APTA 협정에 따라 제4차 라운드 협상이 발효(2018. 7. 1)되어 양허품목 및 양허폭 확대되었다. 약 1,200여개 품목이 한-중 FTA 세율보다 낮게 적용 됨에 따라 APTA, 한-중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시행 2018. 7. 1.)」은 우리나라의 APTA 양허관세를

규정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8. 7. 1)」은 22류, 27류, 28류, 29류, 30류, 38류, 39류, 40류, 64류, 68류, 72류, 73류, 74류, 75류, 76류, 79류, 80류, 85류, 96류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원산지확인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APTA 제4차 라운드 협상에서 2191품목(중국 HS 8단위 기준)에 대한 양허관세율 특혜폭(10%-100%)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류에 대해서는 35%의 양허관세율 특혜폭(MOP)을 정하고 있다. 특혜폭(MOP)은 동종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의 절대적인 차이가 아닌 그 백분율의 차이를 말한다. 특히 이번 4차 라운드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CTH)을

선택적용하게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해졌다.

수출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장품의 HS 코드(중국 HS 8단위 기준)를 검색하여 제33류에 해당하는 21개 품목과 34류에 해당하는 5개 품목을 확인하였다. 아래 <Table 1>은 APTA와 한-중 FTA의 모든 화장품류 개별원산지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한-중 FTA 경우, 제33류에 해당하는 12개 품목과 제 34류에 해당하는 4개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모두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PTA의 경우, 제33류 10개 양허품목과 제34류 2개 양허품목의 원산지기준은 모두 부가가치기준(비원산지+원산지미상 부가가치 55% 이하(FOB가격 대비))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 보다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더 용이하다. 따라서 수출용 화장품이 CTH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중 FTA 양허세율을, RVC 45%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다면 APTA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수출용 화장품이 CTH 기준과 RVC 45%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춘천소재 G기업에서 수출하는 대표적인 기초화장품의 BOM(원산지소명서)을 확보하여 CTH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 보았다.¹⁾ 기초화장품에 속하는 알로에 수딩 젤(제3304호)은 경우, 주원료가 알로에 베라 겔(제1302호), 부틸렌 글리콜(제2905호), 글리세린(제2905호), 에탄올(제2207호) 등으로 4단위 HS 코드가 서로 상이하 며, 부원료의 경우도 제3304호에 속하는 원재료가 없었다. 따라서 4단위 이상의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CTH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화장품 수출업체와 관세청, 관세법인에 문의한 결과 화장품의 CTH기준은 쉽게 충족할 수 있으며, 간혹 부원료 중에서 완제품과 4단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미소기준(FOB 가격기준 10% 이하)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PTA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RVC 45%기준의 경

우는 원산지 재료를 45% 이상(FOB 가격 대비) 사용해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 원자자료를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치 않다.

2. 중국 수입관세율 종류

2020년 중국 관세율표²⁾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보통세율, 최혜국(MFN) 관세율, 잠정세율, 아·태협정세율(APTA), FTA협정관세율로 구분이 된다.

보통세율(General Tariff Rates)은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혜택,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MFN(최혜국) 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한다. 잠정세율이란 MFN(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적용하는 세율로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아·태협정세율(APTA)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이다. FTA 협정관세율은 중국이 FTA를 맺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다.

수입관세와 별개로 증치세와 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있다. 수입물품에 대해 보통 13% 또는 17%의 증치세(Value Added Tax)³⁾가 부과되며, 증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증치세가 면세된다. 소비세(Consumption Tax)⁴⁾는 우리

2) 중국 재무청 제2016-31호(2017년에 대한 관세실행규정) 및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최신 수출입 관세율 개정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관세청 세계 HS 정보).

3) 증치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소비세) × 증치세율

4) 소비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1-소비세율) × 소비세율, 다만 종량세인 경우, 소비세 = 수량 × 단위당 세액

1) FTA 컨설팅을 진행한 서울 소재 E관세법인을 통해 BOM을 확보함.

Table 2. 한-중 FTA 및 APTA 화장품류의 중국 수입관세율(2020년 기준)

물품명	중국 HS 코드	기본 (잠정)	MFN	APTA MOP	한-중 FTA	양허 유형	20년 적용 세율%
향수와 화장수	3303.00-00	150	3	35		E	1.95 (A)
입술화장용품	3304.10-00	150	5			E	5 (M)
눈화장용품	3304.20-00	150	5			E	5 (M)
매니큐어 페디큐어	3304.30-00	150	5			E	5 (M)
파우더 화장품	3304.91-00	150	5			E	5 (M)
기초/마스크 팩	3304.99-00	150	1		5	PR-20	1 (M)
샴푸	3305.10-00	150(2)	3	35	3.8	PR-35	2 (잠)
퍼머넨트 제품	3305.20-00	150	3			E	3 (M)
헤어러커 제품	3305.30-00	150	3			E	3 (M)
기타(헤어린스) 염색약	3305.90-00	150	3	35	4.8	PR-35	1.95 (A)
치약	3306.10-10	150	3	35	4	10	1.95 (A)
기타 치약	3306.10-90	150	3	35	4	10	1.95 (A)
치실(dental floss)	3306.20-00	70	3	35	4	10	1.95 (A)
구강 청결제	3306.90-10	70	3		4	10	3 (M)
기타 치위생용품	3306.90-90	70	3		4	10	3 (M)
면도용 제품(로션)	3307.10-00	150	3	35		E	1.95 (A)
인체용 탈취제	3307.20-00	150	3	35		E	1.95 (A)
목욕용 제품류	3307.30-00	150	3	35	4.8	PR-35	1.95 (A)
향기성 조제품	3307.41-00	150	3		4	10	3 (M)
실내용 방향 조제품	3307.49-00	150	3		4	10	3 (M)
탈모제/기타 화장용품	3307.90-00	150	3	35	5.2	PR-35	1.95 (A)
화장실용품	3401.11-00	130	6.5	35	4	10	4(F)
세탁비누	3401.19-10	80	6.5			E	6.5 (M)
물티슈	3401.19-90	130	6.5		6	10	6(F)
기타 모양의 비누	3401.20-00	130	6.5	35	6	10	4.225 (A)
폼 클렌징	3401.30-00	130	6.5		4	10	4(F)

* A=APTA, M=MFN, 잠=잠정세율, F=한-중 FTA

자료 : 관세청 세계 HS 2020 및 APTA 협정문 원산지규정을 참조하여 재구성

나라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품에 대한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중국 재정부는 2018년 5월 31일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7월 1일부터 1,449개 품목(HS 8단위 기준)의 MFN (최혜국)세율을 평균 15.7%에서 6.9%로 인하하였다. 2018년 5월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기존 수입산 소비재에 대해 시행했던 '잠정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MFN) 수입관세율 조정이다. 이번 조정대상 상품은 주로 식품, 화장품, 의류, 약

품, 전기전자제품과 잡화 등 일용 소비품이다. 특히, 향수,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치약 등 화장품의 MFN 수입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는데, 향수와 치약은 10%에서 잠정세율보다 낮은 3%로, 색조화장품은 10%에서 잠정세율과 동일한 5%로 하향 조정하였고,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등은 2%의 잠정세율 적용에서 1% MFN 세율로 인하하였다.

역시 수출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33류 21개 품목과 34류 5개 품목의 중국 수입관세율 종류를 모두 확인하였다. 현재 잠정세율은 샴푸(2%)에만 부과되고 있고, MFN 세율은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한-중 FTA는 기초/마스크 팩(5%), 샴푸(3.8%), 헤어린스

(4.8%), 치약(4%), 기타치약(4%), 치실(4%), 구강청결제(4%), 기타치위생용품(4%), 목욕용 제품류(4.8%), 향기성 조제품(4%), 실내용 방향 조제품(4%), 탈모제/기타화장품(5.2%), 화장실용품(4%), 물티슈(6%), 기타모양비누(6%), 폼클렌징(4%)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APTA는 발효시점의 MFN 관세(최혜국세율) 대비 관세인하율(MOP, Margin of Preference)을 정하고, 인하율만큼 발효일에 관세율을 일시에 내리는 양허방식을 채택하고 있다(KITA 통상리포트). 따라서 향수와화장수(35%), 샴푸(35%), 헤어린스(35%), 치약(35%), 기타치약(35%), 치실(35%), 면도용 로션(35%), 인체용탈취제(35%), 목욕용탈취제(35%), 탈모제/기타 화장용품(35%), 화장실용품(35%), 기타모양의비누(35%)의 경우, APTA 협정관세 특혜폭⁵⁾을 적용할 수 있다.

이들 관세율 중에서 실제 중국 수입통관시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알아보았다. 2020년 현재 화장품의 중국 수입관세율의 구조는 잠정세율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이후 낮은 순서에 따라 APTA 양허세율, MFN 세율, 한-중 FTA 양허세율을 순서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FN 세율이 한-중 FTA 양허세율보다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중 FTA 수출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잠정세율은 MFN 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샴푸(3305.10호)의 경우는 잠정세율 2%가 MFN 3%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APTA 양허품목은 MFN에서 특혜폭(MOP) 만큼 인하되는데, 향수와 염색약 등 11개 품목은 APTA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MFN 보다 낮은 APTA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MFN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화장실용품(3401.11호)과 폼 클렌징(3401.30호)의 경우는 한-중 FTA

관세율(4%)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APTA 적용품목(RVC 45%) 10가지와 한-중 FTA 적용 품목(CTH) 2가지의 경우는 해당 원산지기준을 충족 후 중국 양허관세를 적용받는 전략이 필요하다.

3. 관세전략 활용상의 문제점

2019년 1분기 한국의 전체 FTA 수출 활용률은 평균 74.7%임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수출 활용률은 57.3%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낮은 중국 수출활용률의 이유로는 중국 수입관세율 구조의 특이성, APTA 개별원산지기준 충족의 어려움, 중소기업 내부의 원산지전담부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1) 중국 수입관세율 구조의 특이성

2020년 현재 화장품의 중국 수입관세율의 구조는 잠정세율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이후 APTA 양허세율, MFN 세율, 한-중 FTA 양허세율 중에 낮은 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이다.

한-중 FTA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의 양허유형을 살펴보면, 기초/마스크 팩(PR-20), 샴푸(PR-35), 기타(헤어린스) 염색약(PR-35), 목욕용 제품류(PR-35), 탈모제/기타 화장용품(PR-35), 치약(10), 기타치약(10), 치실(10), 구강 청결제(10), 기타 치위생용품(10), 향기성 조제품(10), 실내용 방향 조제품(10), 화장실용품(10), 물티슈(10), 기타 모양의 비누(10), 폼 클렌징(10) 등이 있다.

단계별 양허유형 “PR-20”에 해당하는 품목(기초/마스크팩)의 경우, 기준관세율(6.5%)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0퍼센트가 유지된다.

단계별 양허유형 “PR-35”에 해당하는 품목(샴푸, 린스/염색약, 목욕용 제품류, 탈모제/기타화장품)의 경우, 기준관세율⁶⁾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

5) 차. “특혜폭(%)”은 동종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의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 백분율의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특혜폭 = [(최혜국대우 관세율 - 협정상 양허관세율) / 최혜국대우 관세율] × 100(%)이 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1장 일반조항, 제1조 정의, “차”목.

6) 샴푸 6.5%, 린스/염색약 15%, 목욕용 제품류 10%, 탈모제/기타화장품 9%

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65퍼센트가 유지된다.

단계별 양허유형 “10”에 해당하는 품목(치약, 기타치약, 치실, 구강청결제, 기타 치위생용품, 향기성조제품, 실내용 방향조제품, 화장실용품, 물티슈, 기타모양의 비누, 폼클린징)의 경우 기준관세율(10%, 물티슈와 기타모양비누는 15%)이 10년간 균등 철폐되어 10년 후에는 무관세가 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MFN 세율이 한-중 FTA 양허세율보다 낮고, APTA 세율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대다수의 수출업자들은 APTA 원산지증명서 없이 중국의 MFN 관세율을 적용받아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한-중 FTA 양허세율이 MFN 세율 혹은 APTA 양허세율보다 낮아지는 시점에는 한-중 FTA 수출 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2) APTA 개별원산지기준 충족의 어려움

2018년 7월 APTA 4라운드 개정에서 중국은 기존 대비 양허대상을 확대하여 전체 품목의 약 29%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으며, MFN 대비 관세인하율은 평균 33.1%이다.

APTA의 기존 특혜원산지 기준은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역내누적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도록 하며, 주로 부가가치기준이 활용되어 왔으나 4라운드 발효 이후에는 HS 4단위 기준 156개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도 허용하여 3라운드에 비해 활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APTA 국가들과의 수출입에서 중국은 각각 수출 89.5%, 수입 94.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품목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로 전체 수출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수입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으로 전체 수입의 27.8%를 차지하고 있다.

4라운드 개정에서 철강, 플라스틱 등 일부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APTA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APTA의 기존 특혜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 역내누적기준 중 1가지를 충족하도록 하였으며, 주로 부가가치

기준이 활용되어 왔다. 4라운드 발효 이후에는 HS 4단위 기준 156개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도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과 관련하여, 한-중 FTA의 화장품 개별원산지기준(CTH)의 충족은 용이하지만 APTA 개별원산지기준(RVC 45%)은 여전히 충족이 용이하지 않다. APTA의 경우, 화장품 26개 품목 중 11개 품목이 MFN 세율보다 낮지만, 개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용이하지 않고, 설령 AP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기준의 엄격성으로 인해 향후에 원산지 검증이 있을 수 있다.

3) 중소기업 내부의 원산지전담자 부족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 2016)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65%가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도 발효 초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8시간 이내 중국 통관’ 등 한-중 FTA 발효 초기에 비해 통관절차가 개선되었고, 또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보호, 주재원 등 인적 이동 등에 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가 개선되었다는 답변은 여전히 응답자의 20%를 하회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간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및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주요 품목 중 생활용품, 잡화, 소비재가 화학공업제품 등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의 통관 및 원산지 검증절차가 까다로워서 과도한 서류 준비와 통관시간 지연으로 인해 수입자가 FTA C/O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한-중 FTA 수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관세 혜택이 적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통해 한-중 FTA 관련 서류를 구비하는 것보다 기존

Table 3. 중국 인증 대상 화장품 분류

구분	종류	설명	제도	
비 특 수	스킨 케어류	일반	토너(스킨), 에멀전(로션), 크림, 오일, 바디클렌저 등	신고제 (备案)
		안부	아이크림, 마스크팩, 클렌징 폼 등	
	메이크업 제품류	일반	파운데이션, 팩트, 블러셔, 바디블러셔 등	
		아이	아이펜슬, 아이새도우, 마스크라, 리무버 등	
		립	립스틱, 립클로즈, 립펜설 등	
	네일제품류	탐코드, 네일컬러, 리무버 등		
	두발 제품류	일반	헤어오일, 포마드, 헤어로션 등	
		안부	샴푸, 린스, 스프레이 등	
	방한제품류	향수, 오데코롱, 데오도란트 등		
	특 수 *	육발	모발의 성장, 탈모·끊김 감소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염발		모발의 색상을 바꾸는 효과가 있는 화장품		
탕발		모발 굴곡도의 변화나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화장품		
탈모		체모 감소, 제거 효과가 있는 화장품		
미유		여성 가슴의 건강미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건미		체형의 건강미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제취		냄새 제거 효과가 있는 화장품		
거반		피부 표피 색소 침착 경감 효과가 있는 화장품		
방쇄		자외선 흡수, 일광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화장품		

*특수용도화장품 9종 정의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 제56조 참조.
출처: 한국무역협회(2016), 저자 재구성.

의 수출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FTA 관리 전담자의 부재와 담당자의 잦은 이직으로 업무 노하우 축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또한 FTA 인지도와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C/O 서명권자를 신입사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신입사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FTA C/O 서명권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4. 중국의 화장품 비관세조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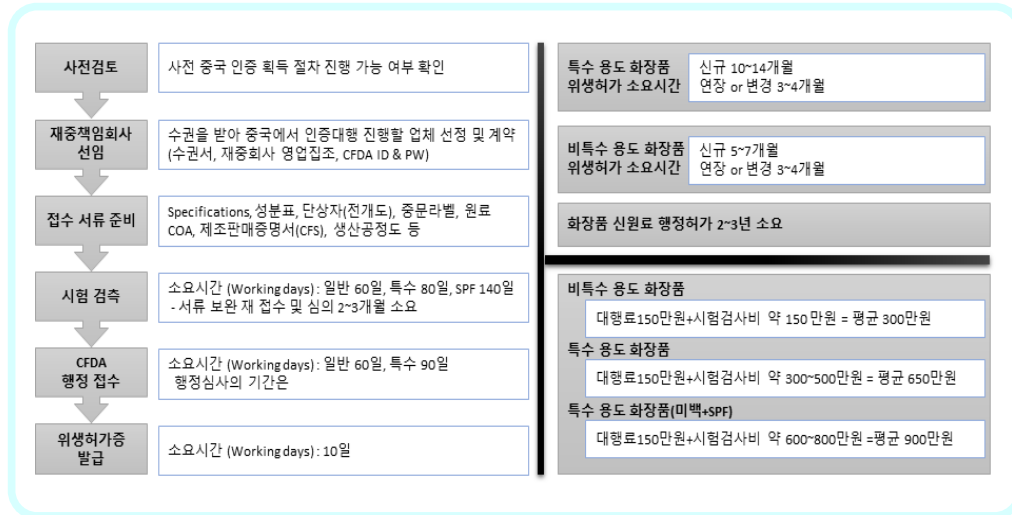
중국에化妆품을 수출하려는 기업도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이하 CFDA)의 화장품분야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CFDA는 2007년 위생부에서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化妆品卫生规范)”을 개정하여 2015년 11월 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전체회의(化妆品标准专家委员会全体会议)에서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术规范)”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여 CFDA가 비준하고 발표하였으며, 2016년 12월 1일부로 실행되었다.7) 중

7) 《化妆品安全技术规范》, “是原卫生部印发的《化妆品卫生规范》(2007年版, 简称《卫生规范》)的修订版。为了满足我国化妆品监管实际的需要, 结合行业发展和科学认识的提高,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组织完成了对《卫生规范》的修订工作, 编制了《技术规范》(2015年版)。”2015年11月经化妆品标准专家委员会全体会议审议通过, 由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

Fig. 1. 화장품 CFDA 인증 절차 및 비용

(단위: %)



출처: 한국무역협회(2016), KOTRA(2018) 글로벌 화장품 산업백서 p.26, 저자 재구성.

국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妆品卫生监督条例) 제10조에 양모·퍼머넌트·염모·바디슬리밍·기습·자외선 차단·체취제거·기미제거·체모 제거용 등 9개 유형의 특수용도화장품(特殊用途化妆品)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화장품은 비특수용도화장품(非特殊用途化妆品)으로 분류한다.

화장품 위생허가의 절차는 중국에 인증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사전검토과정을 거쳐, 인증과 관련한 권한을 수권 받아 중국에서 인증업무 대행 재중책임회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인증대행사를 선정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중국 CFDA에 공식적으로 지정된 시험검측기관에 검측을 의뢰하여 보고서가 준비되면,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CFDA에 정식으로 인증획득 신청을 진행 할 수 있다. 일련의 인증획득절차는 화장품 분류별로 소요시간과 비용이 상이하다. 위생허가인증의 유효기간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 제5

조⁹⁾와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제2조 제3항¹⁰⁾에 유효기간은 4년이며, 2년에 1회 점검을 진행함을 명시하였다.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제15조¹¹⁾에 수입제품에 대한 인증유효기간은 4년이며,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제39조에 의하면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기한 만료 2개월 전부터 기한연장신청이 가능하다.

总局批准颁布, 自2016年12月1日起施行⁸⁾
8) 化妆品卫生监督条例, 卫生部令第3号, 第十条, “特殊用途化妆品是指用于育发`染发`烫发`脱毛`美乳`健美`除臭`祛斑`防晒的化妆品”⁹⁾

9) 化妆品卫生监督条例, 第五条, “《化妆品生产企业卫生许可证》由省`自治区`直辖市卫生行政部门批准并颁发。《化妆品生产企业卫生许可证》有效期四年, 每2年复核1次”
10) 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第三条, “(三)《化妆品生产企业卫生许可证》采用统一编号, 有效期四年。省`自治区`直辖市卫生行政部门应依据原申报材料每二年对企业复核一次”
11) 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 第十五条, 特殊用途化妆品批准文号每四年重新审查一次。期满前四至六个月由企业执原批件和下列资料重新向省`自治区`直辖市卫生行政部门申请, 并填写申请表(附件三)一式三份。”

Table 4. 수출 프로세스 소요시간 및 발생비용

		수출절차	소요시간*	발생비용*
간접비용	계약전 단계	① 상표등록(10년 유효)	5 개월	상표등록 1,000 RMB(20만원)/건당 변리사비용 150 만원
		② 인증획득(비·특수 각 1종) 각종 검수비 인증대행비	10-14개월	총 1,004 만원 504 만원 500 만원
		③ 중문 라벨 제작	3개월	200 만원
		소 계		1,374 만원
		수출제품 제품출하가격(EXW)		(환율 1,200원) USD 5,475
직접비용	수출지	④ 수출지 국내운송	1일	22 만원
		⑤ 수출통관 및 선적	2일	33 만원
	국제 운송	⑥ CIF Tianjin 해상운송 적하보험	4일	해운 300 USD 4 만원
		중국 수입 관세(1%, 5%), 증치세(17%)		RMB

* 소요시간 및 발생비용: 각 단계별 소요시간과 비용의 범위가 있는 경우, 그 평균값을 적용.
출처: 상기 전문내용을 근거로 저자 작성.

5. 화장품 비관세조치의 문제점

1) 비관세조치가 시간과 비용에 미치는 영향

화장품 비관세조치가 미치는 시간과 비용의 영향을 정확히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화장품의 종류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천소재 제조업체가 기초화장품인 스킨토너(3304.99)과 눈 화장용품인 아이크림(3304.20)을 각각 300개와 450개, 총 FOB \$5,475달러를 중국 텐진으로 수출할 경우를 가정하여 화장품 인증절차 소요시간과 비용을 아래 산정해 보았다.

먼저, 상표등록과 중문라벨 제작비용은 전문기관에 의뢰한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인증획득비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수출제품으로 선정한 특수용도화장품(스킨 토너 290만원)와 비특수용도화장품(아이 크림 210만원)의 인증대행 견적내용을 적용하였다. 계약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을 계산하면, 상표등록 약 170만원에 인증획득비용 1,004만원과 중문라벨 제

작비용 200만원을 합산한 총 1,374만원이 비관세조치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해상운송과 적하보험은 약 38만원으로 CIF 가격을 산출할 경우 제품출하가격 FOB \$5,475에 추가하면 된다. 수입관세는 두 제품 각각 MFN 1%와 5%가 적용되고, 증치세는 중국 수입업체가 환급 받는 비용이므로 아래 (Table 4)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화장품 비관세조치 절차에서 신규 최대 10개월-14개월이 소요되며, 비용은 최대 1,374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비관세조치가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

비관세조치비용을 연간 발생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상표등록은 10년 유효기간으로 1년에 17만원, CFDA 화장품 인증기간은 4년으로 1년에 약 250만원, 중문라벨 비용은 품목당 5천개 씩 대량주문이 가능하므로 1만개 단위로 200만원이 발생된다. 연 1회 수출할 경우에 연간 비관세조치 관련 비용은 467만원이 소요된다.

먼저 위 중국 텐진 수출과 동일한 계약 조건 하에, 연간 수출횟수가 증가하는 경우 비관세조

Table 5. 연간 수출횟수 및 1회 수출물량에 따른 비관세조치 비용 비율(%)

구분	EXW가격(만원)	%	비관세조치 비용(만원)	비관세조치 비용(만원/%)	수출부대비비용(만원/%)
년 1회 수출	657	55.7%	467	39.6%	55 4.7%
년 2회 수출	1,314	69.5%	467	24.7%	110 5.8%
년 10회 수출	6,570	86.6%	467	6.2%	550 7.2%
1회 750개	657	55.7%	467	39.6%	55 4.7%
1회 3,750개(5배)	3285	86.3%	467	12.3%	55 1.4%
1회 11,250개(15배)	9855	92.8%	667	6.3%	95 0.9%

치 관련 비용을 분석하면 연간 2회 수출을 할 경우 1회 수출당 233.5만원이며, 10회 수출을 진행할 경우 1회 수출당 46.7만원이 비관세조치

로 발생하는 비용이 된다. 즉, 연간 수출횟수가 증가할수록 수출가격에서 비관세조치 관련 간접 비용의 비율은 점차 낮아진다. 또한 동일한 계약

Table 6. 화장품 수출의 FTA 및 APTA 양허관세 활용 전략

HS 코드	품목명	MFN	APTA	한-중 FTA		20년 적용세율	FTA ≤ APTA	FTA ≤ MFN
				20년	양허유형			
3303.00-00	향수와 화장수	3	1.95		E	APTA		
3304.99-00	기초/마스크 팩	1		5	PR-20	MFN		
3305.10-00	삼푸	3	1.95	3.8	PR-35	잠정 2%		
3305.90-00	헤어린스/염색약	3	1.95	4.8	PR-35	APTA		
3306.10-10	치약	3	1.95	4	10년 균등	APTA	2023년	2021년
3306.10-90	기타 치약	3	1.95	4	10년 균등	APTA	2023년	2021년
3306.20-00	치실	3	1.95	4	10년 균등	APTA	2023년	2021년
3306.90-10	구강 청결제	3		4	10년 균등	MFN		2021년
3306.90-90	기타 치위생용품	3		4	10년 균등	MFN		2021년
3307.10-00	면도용 로션	3	1.95		E	APTA		
3307.20-00	인체용 탈취제	3	1.95		E	APTA		
3307.30-00	목욕용 제품류	3	1.95	4.8	PR-35	APTA		
3307.41-00	향기성 조제품	3		4	10년 균등	MFN		2021년
3307.49-00	실내 방향조제품	3		4	10년 균등	MFN		2021년
3307.90-00	탈모제 등	3	1.95	5.2	PR-35	APTA		
3401.11-00	화장실용품	6.5	4.225	4	10년 균등	FTA	2020년	2018년
3401.19-90	물티슈	6.5		6	10년 균등	FTA		2020년
3401.20-00	기타 모양의 비누	6.5	4.225	6	10년 균등	APTA	2022년	2020년
3401.30-00	폼 클렌징	6.5		4	10년 균등	FTA		2018년

*APTA 협정문, 한중 FTA 협정문

조건에서 1년간 1회 수출을 한다고 가정 후, 수출 제품 공급량에 변화를 주어 개당 비관세조치의 비용을 분석해보면, 750개에 467만원 가량의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개당 0.62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5배인 3,750개를 수출하면 개당 0.12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Table 5>에서 연간 수출횟수와 1회 수출량이 많아질수록 수출제품가격 대비 비관세조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비율 역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IV. 대중국 수출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

1. 관세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

1) 한-중 FTA 및 APTA 적극 활용

현재는 APTA 세율이 한-중 FTA 세율 보다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APTA 관세율을 적극 활용하고, 이후 한-중 FTA 세율이 APTA 보다 더 낮아지는 시점부터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즉, APTA와 한-중 FTA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FTA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수출량이 가장 많은 3304호 제품들은 한-중 FTA 관세양허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현행 MFN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기초화장품/마스크팩은 현행 MFN 1%가 적용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메이크업 파우더 화장품, 입술화장용품, 눈화장용품, 매니큐어 페디큐어 등은 현행 MFN 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양허세율 적용 보다는 FTA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둘째, 2020년부터 한-중 FTA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화장품실용품과 폼 클렌징은 2018년부터 한-중 FTA 관세율(6%)이 현행 MFN 세율(6.5%) 보다 낮아졌고, 멀티슈와 기타 모양의 비누는 2020년부터 한-중 FTA 관세율(6%)이 MFN

6.5%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이들 품목은 FTA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후로 매년 1%씩 낮아지다가 2026년부터 한-중 FTA 양허관세는 0%가 되므로 그 효용은 갈수록 크다.

셋째, 2022년부터 한-중 FTA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치약, 기타 치약, 치실, 구강 청결제, 기타 치위생용품, 향기성 조제품, 실내 방향조제품의 경우, 2021년부터 한-중 FTA 양허세율(3%)이 현행 MFN 3%와 같아진다. 물론 현재에도 APTA 1.95%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복잡한 APTA 개별원산지기준(RVC 45%)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22년부터 한-중 FTA를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이들 제품들은 이후로도 매년 1%씩 낮아지다가 2024년에 한-중 FTA 양허관세는 0%가 되므로 그 효용은 갈수록 크다.

넷째, APTA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향수와 화장품수, 헤어린스/염색약, 면도용 로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제품류, 탈모제는 APTA 세율이 1.95%로 현행 MFN 세율 3%보다 낮다. 한-중 FTA 양허품목에서 빠진 이들 제품은 APTA 개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한 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 FTA 비즈니스 모델 활용

FTA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적절하게 FTA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발된 FTA 활용 모델을 말한다. FTA 비즈니스 모델은 2007년경부터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높여 FTA 체결 혜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한-중 FTA의 경우도 FTA 관세 인하를 활용한 수출 모델과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제한적 역외가공규정(개성공단)을 이용한 모델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화장품 수출에 있어서 FTA 관세 인하를 활용한 수출 모델은 원재료(알로에 베라 겔(제1302호), 부틸렌 글리콜(제2905호), 글리세린(제2905호), 에탄올(제2207호)를 중국이나 아세

안 국가 등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 후 국내 가공을 통해 한-중 FTA 개별원산지결정기준(PSR)과 AP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킨 후 완제품(알로에 수딩 젤(제3304호))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를 통해 원재료 수입 시 양허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고, 완제품 수출시 중국 측의 수입 관세양허를 받을 수 있어서 중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화장품 수출에 있어서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은 조립가공을 중국 현지에서 실시 후 중국이 체결한 13개 FTA 체결국(홍콩, 마카오, 호주, 스위스, 아이슬란드, 대만, 코스타리카, 페루, 싱가포르, 뉴질랜드, 파키스탄, 칠레, 아세안)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등 16개국 참여하는 RCEP이 발표되면, 이 모델의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제한적 역외가공규정(개성공단)을 이용한 모델은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특혜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3조를 활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품목별원산지기준(부속서 3-가)에 따르면,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최종재 가격(FOB)의 40% 이하, 그리고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 가치의 60% 이상일 것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현재 31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역외가공이 허용(부속서 3-나)되고 있고, 품목은 양국간 합의에 따라 매년 개정이 가능하다.

넷째, 그 밖에도 위 모델과 결합하여 중국 권역별 유망산업 활용 모델, R&D를 활용한 핵심 부품 전환모델, 기술협력형 글로벌 벨류체인(GVC)모델, 조립공장 이전형 GVC 모델 등이 활용될 수 있다.

3)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

첫째, APTA와 한-중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통관절차 원활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 측에서 화공·화학제품 및 항공운송제

품의 FTA 관세 적용 시 엄격한 통관절차에 따른 통관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반 통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국은 48시간 통관 규정을 EDI 신고 이후의 관세납부, 면장발급 시간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비관세절차에 해당하는 상품검사국 검사와 신고절차 시간을 제외하고 있다. 상해의 경우 물동량이 많아 48시간 이내 통관이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HS 코드 앞 6자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중국 통관 규정상 세관장 허가를 받아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사후 제출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C/O 사후제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통관절차 문제 및 지적권 등 비관세조치 개선을 위한 현안들이 한-중 FTA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실무협상에서 제기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인지도 상승 - 활용도 상승 - FTA 활용 성과의 FTA 선순환 작용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FTA 활용도 상승전략을 펼쳐야 한다. 화장품 산업의 FTA 수출 활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 기준 간소화 및 표준화, FTA 특혜관세 수준제고, 개별원산지기준 충족을 위한 정부의 FTA 활용지원(FTA 컨설팅 제도), 수입자의 관심유도(한-아세안 FTA), 국내 기업간 납품거래시 원산지 정보 등 원산지관리 시스템 공유 및 협력, FTA 정보획득역량 강화(유관기관의 홍보 및 지원) 및 C/O 발급비용 최소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용태, 정재완, 2013). 또한 한-중 FTA 수출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의 한-중 FTA 협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도를 높여야 하며, 이들 중국 기업을 상담 및 지원해주는 KOTRA 무역관 등 해외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FTA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FTA 관리보다는 수출업체 담당자의 C/O 발급절차와 HS번호 및 관세율에 대한 인지도를 집중적으로 제고 시켜야 한다. 또한 한-중 FTA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에 FTA 전담관리자가 관련 최신정보를 축적하고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및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FTA C/O 발급, 원산지 검증 등 원산지 업무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지역의 FTA 지원센터와 연결하여 화장품의 개별원산지기준 충족시키기 위한 FTA 원산지업무를 습득하게 하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FTA C/O 서명권자 교체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 업무 노하우를 기업 구성원 상호간에 서로 공유토록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하고, 업체별로 수출화장품에 대한 FTA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FTA 최적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품 인증, 라벨 등 중국의 비관세조치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정부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수입국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2. 비관세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

1)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안

우리나라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중국 수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행정기관은 중국 정부와 무역자유화를 위해 각종 조약과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약서(MOU) 등을 체결하였으나 비관세조치의 정성적인 특징으로 조약 및 MOU 체결 등 양자협상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비관세조치 극복을 위해 AEO MRA 제도의 확산 및 지원과 인증제도 관련 한중 MOU 체결 확대 그리고 국내 인허가 제도 및 기술조건 국제표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AEO MRA 제도의 확산 및 지원이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중국 진출시 인증획득과 해관통관에 대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과 중국의 해관총서는 2013년 6월 27일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하였다. WTO에서 통관안전과 무역원활화를 추구하기 위해 제시한 'SAFE Framework 표준'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2009년 4월부터, 중국 해관총서는 2008년 4월 1일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분류관리방법”을 통해 본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중간 체결한 AEO MRA제도로 AEO업체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중국 해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시, 우선통관(검사면제, 심사완화, 신속통관)의 혜택을 통해 화물 검사율과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¹²⁾ AEO인증은 한국에서 획득하여도 중국이나 그 외의 AEO MRA를 체결한 국가라면 모두 적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당사자만이 AEO를 획득하였다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는 본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AEO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다. 높은 인증 비용과 요구조건으로 까다로운 AEO 인증절차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은 AEO인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학려군·김홍률, 2017). 이에 우리나라 정부와 유관기관은 중소기업과 초기 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AEO제도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에 좀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증제도 관련 한·중 MOU 체결의 확대 방안이다. 화장품 비관세조치 관련 법률과 표준, 그리고 인증, 인가, 검역, 검측, 전문인력 배양 및 교육 등 전반적인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 관세청, 특허청,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정부차원에서 중국 질검총국 등 관련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왔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의 조치완화에 대한 체감은 현저히 낮은 만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중 FTA 협정문 제5.5조(SPS 위원회 설립)와 제16.7조(양자 협력) 및 제2.15조(시험소 지정) 조항에 근거하여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시험소 지정 및 그 시험 결과의 상

12) NEWS1뉴스, 박찬수 기자, 2017.07.03. 보도, 한중AEO MRA 효과 뚜렷... 검사율·통관시간 단축 등, <http://news1.kr/articles/?3037298>

Table 7. 화장품 관련 한중 MOU 체결 현황

합의일자	한국 기관	중국 기관	MOU
2015.10.31	관세청	해관총서	한-중국 AEO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에 대한 결의안
2015.09.0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국 평호시	한-중국 표준·인증 분야 협력 MOU
2015.09.02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질검총국	한-중국 품질검사검역 협력 MOU
2014.07.03	관세청	해관총서	한-중 세관당국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2013.12.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약품감독관 리총국/질검총국	한-중국 식·의약품·화장품 관련 MOU 체결
2013.12.09	특허청	지식산업국	한-중 지재권 MOU 체결
2013.11.13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질검총국	한-중국 식품·화장품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출처: 경제외교활동포털(president.globalwindow.org).

호 인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은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위조제품 방지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2020년까지 통일화된 위조방지역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인증관련 국영기업인 CCIC에서 라벨링 형식으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으로 국내 제품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도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생검역의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위조방지역추적 시스템에도 주목을 하여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중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인허가 제도 및 기술조건의 국제 표준화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인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기술규제와 인증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에도 이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산업발전 정도와 법률체계 등의 차이로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조건과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어, 기업의 국제거래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한다. 다만 유럽의 CE인증과 중국의 강제인증 같은 경우는 방대한 시장과 정치적 요인으로 세계 필수 인증으로 인식되며(김희철, 2016), 선진적인 기술표준으로 국제표준적인 역할을 하기에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적용한다면, 자국 기업의 대외활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정우경 외, 2018).

2)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방안

중국을 진출하려는 기업들 중,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과 인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조사와 수출제품에 대한 원가 분석 및 예상 가능한 리스크 등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지원사업 활용’과 ‘동종업계와의 협업을 통한 중국 진출’ 및 ‘수출전략 수립 및 수출원가 관리법’ 3가지 분야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지원사업 활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www.bizinfo.go.k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GMD사업”, 창업넷(www.k-startup.go.kr) 및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등의 지원사업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19년도 지원규모는 106.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684개사를 대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지원내용은 인증획득과 관련해서 발생비용의 50~70% 범위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GMD사업”은 민간 수출전문기업(GMD, Global Market

Developer)플에 등록된 수출기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사업도 활용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지방청별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중앙 행정부와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비즈니스지원단 등의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를 기업이 적절히 활용한다면, 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동종 업계와 협업을 통한 중국 진출이다. 해외인증획득을 주 목적 중에 하나로 설정하여 해외지사 설립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외지사회사업 등의 지원사업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로 인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진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업체 간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즉, 동종 또는 유사업계에 규모가 비슷한 다수의 업체가 공동투자로 조합 등을 설립하여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는 해당 해외 시장에 장기적인 진출을 위해서 다수의 기업이 협업하여 해외 법인이나 지사 설립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 투자로 설립한 해외 법인은 투자기업들의 인증획득 대행과 유통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 대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여러 업체가 공동투자의 형식으로 그룹을 이루게 될 경우, 시장점유율 향상과 각 투자사의 제품을 모아 세트상품 출시 등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다른 협업의 형태는 ‘제조기업, 무역회사, 물류회사, 관세사 등’ 하나의 유통시스템을 이룩하여 진출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기업의 제품 유통 전 과정이 협력업체와 업무 분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의 기업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수출원가 관리를 통한 수출전략 수립이다. 수출원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라인의 생산가능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수

출대상국의 수입제도 확인을 통해 인증획득 및 라벨 제작비용 등 업무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먼저 보편적으로 제조기업 생산라인의 가동률은 60~80% 정도이며, 새로운 신규시장을 개척할 경우 기존 가동률에 5~10%의 수준을 연간 목표 물량으로 설정한다. 그 사유는 목표 시장에 처음 진출할 경우, 새로운 파트너와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기 전이므로 대금 지불 등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라인 가동률과 연간 수출가능 수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의 수출 마진을 5%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목표 수출 물량에 대한 수출 총 원가에서 수출부대비용 외에 발생한 비관세조치 비용이 5%를 넘게 된다면 적자가 발생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만약 기업이 수출 경험이 없어 연간 물량을 산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새로운 바이어를 발굴하였을 경우 공급물량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도 한다. 연간 수출 가능 수량을 예상하지 못 할 경우와 연간 수출 물량을 설정하였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한 수입국 제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과 수출 이익 범위를 비교공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Calvin and Krissoff, 1998; Deardorff and Stern, 1998).

비관세조치 비중을 확인하는 공식은 식(1)과 같이 표현하였다.

$$NTM_{sp.gr.} = \frac{NTM_{year}^1}{P_{year\ or\ per}^{exw} + P_{year\ or\ per}^{extra} + NTM_{year}^1} \times 100$$

(1)

$NTM_{sp.gr.}$ = 연간(또는 수출1회) 수출 총가격의 비관세조치 비용 비중

$P_{year\ or\ per}^{exw}$ = 연간(또는 수출 1회) 수출거래 EXW가격

$P_{year\ or\ per}^{extra}$ = 연간(또는 수출 1 회) 수출거래 부대비용

첫째, 수출경험이 없어, 연간 수출물량을 추산하기 어려운 경우, 신규 납품처 연간 평균 공급수량으로 추산하는 제품출하가격은 식(2)과 같다.

$$P_{exw} = P_{unit} \times NB_{qty}^{avg} \quad (2)$$

NB_{avg}^{avg} = average NB_{qty}^{avg} = NB = New Buyer,

둘째, 생산라인의 가동율(예시, 5~10%)을 통해 연간 수출 가능 물량 설정이 가능한 경우, 제품출하가격 추산 공식은 식(3)과 같이 나타내었다.

$$P_{exw} = P_{unit} \times (M_{year}^{qty} \times 5 \sim 10\%) \quad (3)$$

M_{year}^{qty} = 연간 제품 생산량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서 대중국 진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선행연구와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제4장에서 관세와 비관세 부문에서 한국 화장품의 대중국 진출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장품 중국진출의 관세전략과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FTA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수출량이 가장 많은 3304호 제품들은 한-중 FTA 관세양허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기초화장품/ 마스크팩은 현행 MFN 1%, 메이크업 파우더 화장품, 입술화장용품, 눈화장용품, 매니큐어 페디큐어 등은 현행 MFN 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수입선다변화를 통한 FTA 비

즈니스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둘째, 2020년부터 한-중 FTA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화장품용품과 폼 클렌징은 2018년부터 한-중 FTA 관세율(6%)이 현행 MFN 세율(6.5%)보다 낮아졌고, 물티슈와 기타 모양의 비누는 2020년부터 한-중 FTA 관세율(6%)이 MFN 6.5%보다 낮아졌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한-중 FTA 양허관세율은 매년 1%씩 낮아지다가 2026년부터 0%가 되기 때문에 향후 FTA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셋째, 2022년부터 한-중 FTA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치약, 기타 치약, 치실, 구강 청결제, 기타 치위생용품, 향기성 조제품, 실내 방향조제품의 경우, 2021년부터 한-중 FTA 양허세율(3%)이 현행 MFN 3%과 같아진다. 따라서 2022부터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들 품목의 한-중 FTA 양허관세율은 매년 1%씩 낮아지다가 2024년에 0%가 되기 때문에 그 효용은 갈수록 커진다.

넷째, APTA를 활용하는 전략이다. 향수와 화장품수, 헤어린스/염색약, 면도용 로션, 인체용 탈취제, 목욕용 제품류, 탈모제는 APTA 세율이 1.95%로 현행 MFN 세율 3%보다 낮다. 한-중 FTA 양허품목에서 빠진 이들 제품은 APTA 개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한 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APTA와 한-중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통관절차 원활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지도 상승 - 활용도 상승 - FTA 활용 성과의 FTA 선순환 작용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FTA 활용도 상승 전략을 펼쳐야 한다.

기업들은 FTA 인지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FTA 관리보다는 수출업체 담당자의 C/O 발급절차와 HS번호 및 중국 관세율 체계에 대한 인지도를 집중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진행하는 비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등록, CFDA 인증 획득, 그리고 제품과 인증 마크 등의 라벨 제작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지식재산권 등록과 인증획득 및 각종 라벨 제작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10개월-14개월이 소요되며, 비용은 최대 1,374만원(연간 467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용은 수출제품 원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력을 하락시킨다. 게다가 매 수출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연간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수출원가 구성요소 중, 비관세조치 비용은 연간 고정비용으로 적용되는 특성으로 인해 수출횟수와 수출 물량이 증가할수록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 인터뷰와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근거로 중국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안으로는 'AEO MRA 제도의 확산 및 지원'과 '인증제도 관련 한중 MOU 체결 확대' 그리고 '국내 인허가 제도 및 기술조건 국제표준화'를 제안하였다. AEO(수출입안전 관리우수업체)는 WTO의 통관 안전 관련 제도로 체결국은 AEO인증 획득 기업의 수입통관 진행시 화물검사율과 통관소요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인증제도 관련 양국간의 MOU 체결은

상호간의 시스템, 검역, 전문 인력 배양 등 전반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제도를 상호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유사하게 하여 무역원활화에 일조하게 된다. 국제표준화는 세계 선진 기술조건이나 인증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 도입하게 된다면, 국내 제도와 국제 제도의 유사성이 형성되어 자국 기업의 업무속도도와 해외시장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등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사업 활용'과 동종 업계 또는 타 기업과 협업을 통해 해외지사 등을 설립하여 인증대행 및 유통을 진행하여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화 할 수 있는 '협업 해외진출'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해당시장의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수출원가 요소를 관리하여 수출전략을 수립 하는 '수출원가 관리를 통한 수출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화장품 산업의 관세 및 비관세 분야의 대중국 진출 전략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한-중 FTA 활용과 수출원가관리를 통하여 수출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하였다.

References

- 김한성, 조미진 (2010), Impact of Rules of Origin on FTA Utilization in Korean FTAs, 대외경제연구원, Working Paper, 10-08
- 조미진, 김태황 (2012)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한국EU학회, EU학 연구, 17(1), 45-82
- 심재권 (2013), FTA 활용역량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과 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인, 이준건(2014), FTA 인지도 및 활용도가 FTA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16(3), 225-251.
- 김용태(2014), 한국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및 성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윤영호, 나도성(2013), FTA 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8(2), 295-319.
- 박근호 (2015), 중소기업의 기업가지향성과 FTA 활용역량,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6(1), 85-105.
- 김태인, 선즈평 (2016), 강원도 경쟁우위산업의 FTA 활용률 제고방안 연구, 무역연구, 12(3), 519-538.

- 공윤엽 (2018), 대구 중소기업의 FTA 활용, R&D 역량 및 기업가정신이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연구, 17(1), 89-112.
- 제영광, 최장우 (2018), 우리나라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제도의 성과에 관한연구: 관세청의 YES-FTA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19(3), 3-25.
- 김창봉, 정재우, 남윤미 (2018), 자원기반관점(RBV)의 원산지관리역량이 FTA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20(1), 153-176.
- 김중훈 (2012), 중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13(1), 73-99.
- 김동휴, 이희진, 광주영 (2013), 한국 FTA와 중국 FTA의 TBT 장 비교분석: 한중 FTA TBT 협상에 주는 함의,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16(4), 125-150.
- 손기윤 (2015), 캐나다 반덤핑규정 연구: 공익조항과 일몰제시조항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9(2), 419-438
- 류예리 (2015), 한-중 FTA를 통한 중국 의약품분야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26(2), 25-42.
- 왕상한, 박언경 (2016), 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중 FTA 이행방안,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51(2), 303-334.
- 이국화 (2013),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중국 경제외교와 대응전략연구,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23(2), 163-181.
- 이찬우 (2012), 중국의 녹색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5, 129-154.
- 은웅 (2012), 주요국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수출구조 변화 및 대응방향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유통경영학회, 유통경영학회지, 15(3), 89-101.
- 정우경, 김태인 (2018), 중국 무역기술장벽과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위조방지역추적코드기술조건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20(1), 67-89.
- 정우경 (2018),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중국 비관세조치 대응에 관한 사례연구 : SPS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관세청, 보도자료 2019. 5. 10(금)
- Deardorff, A. and R. Stern (1997), "Measurement of Non-Tariff Barrier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79, OECD Publishing, Paris.
- Linda Cavin and Barry Krissoff(1998),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 case study of phytosanitary barriers and U.S.-Japanese apple trad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3(2), 351-366.

化妝品衛生監督條例

化妝品衛生監督條例實施細則